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8855

제안연월일: 2025. 3.

제 안 자: 정무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경과

법률안 명	의안번호	대표발의	발의일		심사경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2201498	이정문의원 등 14인	2024. 7. 8.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무위원회(2024. 9. 25.)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924	한민수의원 등 10인	2024. 7. 18.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무위원회(2024. 9. 25.)

나.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2. 20.) 는 위 2건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25. 2. 24.)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죄질과 책임을 달리하므로, 형사제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제공요구 행위로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형사제재를 가하는 것은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음(2020헌가5, 2022. 2. 24. 결정).

이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거래정보등을 요구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의 위헌성을 해소하려 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4항). 법률 제 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를 "누구든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금융회사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자에게 그"를 "자에게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	
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	
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	
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	
서는 아니 되며, <u>누구든지 금융</u>	<u>누구든지 거짓 또</u>
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	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	<u>방법으로 금융회사등에</u>
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	
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각 호[종전의 금융실	4

명거래에관한법률(대통령긴급 재정경제명령 제16호로 폐지되 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제 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금 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 급재정경제명령(법률 제5493호 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4조제1항 각 호 를 포함한다]에 따라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 며, 누구든지 거래정보등을 알 게 된 자에게 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 다. 다만, 금융위원회 또는 금 융감독원장이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알게 된 거래정 보등을 외국 금융감독기관에 제공하거나 거래소가 제1항제7 호에 따라 외국거래소 등에 거 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에게 거짓 또는 그 밖
<u>자에게 거짓 또는 그 밖</u> 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